

청주지방법원 2021. 4. 29 선고 2020나13404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(가액배상청구)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21. 4. 29 선고 2020나13404 판결

청주지방법원 2020. 6. 4 선고 2019가단3066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

담당변호사 박은태, 김수경, 김재인, 정우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

피고, 항소인 B

변론 종결 2021. 3. 4

판결 선고 2021. 4. 29

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. 6. 4. 선고 2019가단3066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5지분에 관하여 2014. 7. 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1, 842, 6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21,842,58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D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으로서 상 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, 주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한 2003. 7. 5. 로부터 5년이 도과한 시점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므로 보건대,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(민법 제440조).

다만,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,민법 저나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 기 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 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하는 취지라고는 풀 이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서,갑 제11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원고 는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주채무자인 D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(부 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소8023)을 받아 두었고, 그 이후 D의 신청으로 원고가 채 권자목록에 포함된 개인회생절차(부산지방법원 2009개회52220)가 개시되었다가 2015.1. 5.경 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.

이에 의하면,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다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2015.1. 5.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,이는 당연히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도 효력을 미 친다 할 것이다.

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C 을 상대로 하여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(청주지방법원 2009차5264)을 받아둔 사실이 인정되는바,이에 의하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, 위 2015.1. 5.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아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 았다고 판단된다.

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성기판사 오태환 판사 최유나

별지